

TBT 중앙사무국 동정

노르웨이의 유해물질 사용금지(PoHS)에 대한 대응



최미애

기술규제내용과 품질연구팀
02-609-7255
macho@mie.go.kr

노르웨이는 2007년 6월 소비자제품내에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WTO 사무국에 'TBT' 통보하였다.

노르웨이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사용제품의 제조, 수출입,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Norwegian Product Regulations)에 소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 관련 규제(이하 PoHS라 함)를 추가하여 2008년 1월 시행을 계획하였다.

통 조치는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18종의 유해물질별로 규정된 최대허용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함유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운송기에 장착된 기기, 타이어, 식품 및 식품포장재, 화학비료, 의료기기, 담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U의 RoHS는 전기 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최대허용농도를 중량대비 0.1%, 카드뮴은 0.01%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도 이를 따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RoHS의 경우에는 브롬계 난연제를 제외한 4종 중금속에 대하여 제한한다.

이에 비해 PoHS는 소비자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금지하는 유해물질도 18종에 이르고 있어 관련업체들을 긴장시켜 왔다.

1 TRT 통부문 : G/TRT/N/NOR/17(2007.6.8)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2 '소비자제품'은 일반 소비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3 전기전자제품내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estrictions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4 POP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우리말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
 5 UNEP(유엔환경계획)이 중심이 되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01년 5월 12가 POPs를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됐다

노르웨이의 급진적인 환경규제 행보는 EU를 비롯한 여타 국가의 환경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국제적인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과 같은 국제환경협약 논의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르웨이의 동 조치와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은 동 규제의 시행을 저지하거나 규제 내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규제의 준수를 위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고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완곡한 의견과 WTO/TBT 협정의 위배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므로 시행을 반대하는 강경한 대응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7년 제3차 WTO/TBT 위원회(11.9)에서 본격화되어 미국을 위시하여 일본, 이스라엘, 요르단 대표로부터 강경한 이의제기와 함께 시정할 것을 촉구기 있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노르웨이의 동 조치에 대해 TBT 통보시부터 관련협회와 업계에 통보분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파급영향을 우려하며 수차례 국내 의견수렴을 시도한 바 있다.

그 와중에 '08년 3월 한국바이탈환경협의회에서

18종의 유해물질 중 PVC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EHP(diethylhexyl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제외해 줄 것을 노르웨이측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

노르웨이측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DEHP의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요한 만큼 자료를 수집할 것을 협의회측에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바이탈환경협의회는 EU에서 DEHP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한 EU Recommendation(07)과 일본 환경성의 보고서('03)를 제시하였다. EU는 DEHP는 인체독성에서는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환경측면에서만 위해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었다.

일본 환경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DEHP는 포유류 및 어류에서 내분비계 교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DEHP 국내시장은 연간 7,000억원 규모로, 2008년 예상 수출규모는 약 23만톤으로 약 3,500억원이며, 관련되는 연질 PVC 산업의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현실

(xiv) Norway - Proposed regulation concerning specific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G/TBT/NOR/17)

151. The representative of Korea took note of the fact that Norway was reviewing the comments concerning the proposed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 which had been made at the last TBT Committee. His delegation looked forward to having updates on this issue. In particular, it was stressed that there were no scientific bases to prohibit bis(2-ethylhexyl)phthalate (DEHP).

만 고려할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

농 건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고 DEHP 관련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하였다.

노르웨이는 이미 어린이와 유아용품에 대한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용 제한 확대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상대국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제1차 WTO/TBT 위원회(3.18~3.19)에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의 동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발효 전에 충분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2008년 제2차 WTO/TBT 위원회(7.1~7.2)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노르웨이측에 농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DEHP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시행유보권을 요구하였다(아래 회의록 참조).

우리나라와 함께 회원국의 이의제기에 의한 노력의 결과, 2008년도 제3차 WTO/TBT 위원회(11.5~11.6)에서는 노르웨이가 초안의 18종 유해불질 중 DEHP를 포함하여 8종은 유해불질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나머지 10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최대허용기준치 설정 등에 대한 노르웨이측의 해명이 있었다. 물론 농 건은 사진에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WTO 회원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TBT 위원회를 통한 공식 발표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TBT 위원회에서는 특정 회원국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자국인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하는 등 WTO/TBT 협정을 위반할 경우, 무역에 피해를 받을 우리가

있는 국가는 TBT 위원회를 통해 상대국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의 기술규제가 시행되면 단순히 순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 여기서 탈피하여 기술규제의 초안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비록 노르웨이의 동 조치가 우리나라의 의견에 의해 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DEHP의 제외를 주장하였고, 노르웨이 산업계에서의 반발이나 여타 국가로부터 상당한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소기에 목적인 바대로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에 WTO/TBT 위원회에서 거둔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 건이 하나의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 업계의 외국 TBT 대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 TBT 위원회나 양자대화를 통해 상대국과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업계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소비자제품내 유해물질 사용금지(PoHS) 규제(안)>

구 분	규제 물질	기준치 (제품내 함유량 wt%)	
		초 안	변 경 안
브롬계 난연제	hexabromocyclododecane(HBCDD)	0.1	0.1
	tetrabromobisphenol A(TBBPA)	1	제 외
염화파라핀	medium-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C14-C17 (MCCP)	0.1	0.1
금속 및 금속화합물	비소 및 비소화합물	0.01	0.01
	납 및 납화합물	0.01	0.01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0.01	0.01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compounds)	tributyltin compounds(TBT)	0.001	제 외
	triphenyltin compounds(TPT)	0.001	제 외
방향물질 (fragrances substance)	musk xylene	0.05	0.05
	musk ketone	0.05	제 외
과불소화 화합물	perfluorooctyl acid(PFOA), and individual salts and esters of PFOA	0.005	0.005
계면활성제	DTDMAC	0.1	제 외
	DODMAC/DSDMAC	0.1	제 외
	DHTDMAC	0.1	제 외
기타 물질	비스페놀-A	0.05 [*] 0.0025 ^{**}	0.005
	diethylhexylphthalate(DEHP)	0.1	제 외
	pentachlorophenol	0.1	0.1
	triclosan	0.001	0.001

* 규제 시행일부터

** 규제 시행 2년후부터

| 기술표준 2008.12